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운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친리안 허이텔 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담당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담당: 이정운 정책연구부장: 795-5918)

제 목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째 1996. 12. 12. (의견서 포함 총 2쪽)

## 보도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줄속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일시: 1996년 12월 12일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吳在植, 이하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이하 여연)은 최근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① 성금의 모금, 관리, 운영에 대한 허가, 승인, 절차를 두고 있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모금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해손하고 있으며,  
② 공동모금회의 구성 및 운영,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③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으며,  
④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과정이 없는 등 법 제정에 있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4. 정부는 당초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 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 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을 제출하였다. 끝.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 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 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이하 공동모금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밝힌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정부안은 민간의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해손하고 있습니다.**

- 정부안에 따르면 공동모금회의 구성과 모금 및 사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성금의 모금, 관리, 운영에 대한 허가, 승인절차를 두고 있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모금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정부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또한 이는 민간단체의 개별적 모금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모금, 집행과정에 있어 독립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공동모금회의 구성 및 운영,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규정이 모호합니다.**

- 중앙·공동모금회, 특별시·광역시·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두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운영을 하며, 공동모금회의 위원으로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모집, 관리,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공동모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공동모금회에 이사회를 두겠다고 하지만 과거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예를 들어 보면 운영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가져올 문제는 불 보듯 편한 것입니다.

###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공동모금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고 (제11조 제1항 1호), 제1호의 사업외의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제11조 제1항 제2호)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속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과정없이 출속으로 입법하려는 것은 199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출속으로 입법되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1996년 12월 12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